



law church 제10호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0 (베네치아의 아침 오피스텔 1208호)
http://www.churchlaw.co.kr law134@naver.com (031) 984-9134

• 교회법 통권 제10호 • 발행인 : 소재열 • 발행처 : 한국교회법연구소 • 발행일 : 2021. 8. 1.



• 한국교회법연구소 사업자번호 : 119-82-83446
• 기업은행 657-020624-04-018 (예금주 : 한국교회법연구소)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자력구제(自力救濟)란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자력구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의 사적 폭력을 의미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률상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권리 내용을 실현하는 일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교회 내에서 이러한 자력구제는 용납되지 않는다.

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일부 교인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력구제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교회 내 폭력

과 불법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이 어떻게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목도하고 있다. 교회는 본래의 핵심 가치와 거룩성을 위해 교회의 방향성과 절차적 요건들을 잘 정비하고 이를 준수하여 교회의 본질적인 실질이 이 땅에서 살롬의 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쟁하는 교회의 양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한다.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다 자의적인 생각과 판단일 뿐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분쟁으로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찬송가를 외치며 상대방을 마귀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과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분쟁의 원인자인 작은 누룩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제거할 때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소고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목 차

- I. 서론 - 문제 제기
- II. 장로교회, 원로 목사 추대 법리
 - 1. 원로 목사의 헌법적 규정
 - 2. 원로 목사 추대 시점
 - 3. 미조직 교회 원로 목사 추대 가능 여부
- III.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 1. 분쟁 사례
 - 2. 1심, 원로목사 지위 상실은 예우금지 사유
 - 3. 2심, 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로 목사 승소
- IV. 2심 재판부의 판단
 - 1. 이 사건 총회판결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 1) 피고들의 주장
 - 2) 관련 법리
 - 3) 원고의 지위에 관하여 판단
 - 4) 원고 지위 판단 부분
 - 2.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 판단
 - 1) 당사자들의 주장
 - 2) 총회 재판국의 판결 효력
- (1) 청구에 관한 당부 판단의 전제
- (2) 관련법리
- (3) 재판부의 판단
- (4) 소결
- 3) 원로 목사 지명 자격 문제 판단
- 4)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5) 결의 내용의 변경 여부에 관한 판단
- 6) 소결론
- 3. 원고의 피고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당사자들의 주장
 - 2) 피고 개인에 대한 청구의 가부
- 4. 결론
- V. 원로 목사 지위 유지에 관한 정관 제정
 - 1. 원로 목사와 분쟁교회
 - 2. 원로 목사 지위 철회와 예우 철회
 - 3. 원로 목사 지위 유지의 교회 정관 규정
 - 4. 원로 목사 추대 후 정관변경 경우
- VI. 결론

[요약]

원로 목사는 정년 은퇴한 목사가 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였을 때 명예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에서 원로 목사 지위가 상실된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생활비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원로 목사는 생활비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으며, 2심에서는 1심을 취소하고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원로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된 사안이다. 원심재판부는 총회 재판국이 원로 목사 지위에 대한 판결은 상고 사건과 별개의 것을 상소 사건으로 판결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교단 내부적인 권징 재판으로 원로 목사 지위가 상실되면 원로 목사 지위를 전제로 한 생활비 지급에 대한 예우 역시 상실됨을 보여주기도 한다. 반대로 원로 목사가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될 경우, 원로 목사 지위를 상실케 하여 예우 역시 상실에 하는 방안으로 정관을 정비하는 일은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

※ 소재열 목사 /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 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D.Min., 교회법), 칼빈대학교 (Ph.D.,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 법학박사(민법),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서로 「헌법 정치, 권징조례 해설」 외 다수.

I. 서론 - 문제 제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전국 지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목사가 지교회를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다양한 칭호를 갖고 있다. 지교회 청빙과 노회의 승인으로 담임하는 위임 목사와 시무 목사가 있다. 부목사, 원로 목사, 무임 목사, 전도 목사, 교단 기관 목사, 군중 목사, 군 선교사, 교육 목사, 선교사, 은퇴 목사 등으로 구분한다.

특히 지교회에서 20년 동안 연속으로 시무하여 목회한 자가 70세 정년으로 은퇴할 때 공동의회의 추대 청원과 노회 승인으로 원로 목사가 있다. 원로 목사의 칭호는 노회가 부여하며, 노회 언권 회원이 된다. 정년 전 원로 목사가 취임할 경우, 70세 정년 때까지 노회 지교회를 시무하지 않는 정회원 목사가 된다.

원로 목사로 취임할 때 지교회와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여 유지하며, 일정한 생활비를 계속 지급한다. 물론 시무 기간에 따라 퇴직금과 특별 공로금은 별도이다. 원로 목사는 은퇴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정한 생활비 지급에 부담을 느낀 일부 교회들은 원로 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만 70세 직전에 교회를 사임하도록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부결시키는 사례들이 있다. 이로 인해 담임목사가 은퇴를 전후하여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년 은퇴, 혹은 조기 은퇴로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되면서 일정한 생활비를 약정한다. 그러나 은퇴 후 교회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원로 목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생활비 약정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원로 목사는 당연히 소송

을 제기한다. 교단 내부적인 소송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법원에 약정금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교회 분쟁시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교회법과 법원의 판례법리를 통해 교회에 적용된 원로 목사 약정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장로교회, 원로 목사 추대 법리

1. 원로 목사의 헌법적 규정

1884년 9월 20일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국 선교사 알렌이 제물포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이듬해인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가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입국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미국북장로교선교회 소속이었다. 이후 1892년에 이르러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입국했다. 선교사들의 입국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설립하며,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은 미국 선교회 본부의 매뉴얼 대로 진행되었다.

전국적으로 교회가 설립되자 교회를 관리·감독하는 상급 기관이 노회가 1907년에 설립되었다. 노회란 지역단위로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 노회로 구성된다. 그러나 최초의 노회는 대한민국의 장로교회에 하나의 노회라는 의미로 독노회가 설립되었다. 노회란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다. 1907년에 최초의 노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은 그 해에 최초로 한국인 목사가 최초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전에 전국 교회에서 세워진 장로와 목사가 최초로 전국 교회를 관리·감독하는 하나의 노회, 즉 독노회로 출발하였다. 그 이후 노회의 상급 기관인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1912년 9월 1일에 조직되었다. 이를 설립되었다는 말로 표현한다. 제1회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교회 명칭 앞에 ‘조선예수교장로회’를 붙이기도 했다. 장로교가 아닌 장로회이다.

총회가 조직된 후 1922년에 이르러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을 공포하여 발행하게 되었다. 이 헌법을 대한예수교장로교회 최초의 헌법이라 한다. 헌법은 장로회의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헌법을 계속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원로 목사 규정은 다음과 같다.

원로 목사.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성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원로 목사 자격은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생활비를 작성하여 투표로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리고 노회에 청원하여 승인을 받는다. 원로 목사의 법적 효력은 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시점이 아니라 노회에서 승인한 시점이다. 교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식과는 상관이 없다. 추대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추대식은 당회 주관이 아니라 노회 주관이다. 원로 목사 칭호 부여는 당회의 권한이 아니라 노회이기 때문이다.

2. 원로 목사 추대 시점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원로 목사와 원로장로의 추대 시점이 동일교회 시무 기간이 20년이 넘는 시점에서 시무 사임 된 사람을 추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어 쟁점이 되곤 한다. 은퇴 시점 이전에 공동의회 투표를 해야 하는지, 은퇴 후에도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제97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원로 목사나 원로장로의 추대 시점은 “교회 형편에 따라 하기로 가결하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원로 목사, 장로 관련(2건) : 이리 노회장 조덕영 씨가 현의한 헌법 정치 제5장 5조 ‘원로장로’와 정치 제4장 4조 4항 ‘원로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명예직으로 추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시점이 법적 은퇴일 이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해도 되는 것인지를 해석과 시무 기간이 20년이 넘는 시점에서 시무 사임 된 사람을 원로장로나 원로 목사로 추대할 수 있는지의 해석 건은 교회 형편에 따라 하기로 가결하다.

그러나 제101회 총회에서 똑같은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제101회 총회는 “제97회 총회 결의대로 할 것이요”라고 하면 좋으려면 제97회 총회 결의와 상반된 결의를 하고 말았다. 원로 목사는 제97회 총회 결의대로 “교회 형편에 따라” 하면 되지만 원로장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101회 총회에서 “은퇴할 당시에만 할 수 있음”이라고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말았다.

“원로장로 추대 관련 : 김제 노회장 강동현 씨가 현의한 장로 은퇴 후 공동의회를 통해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

하다(헌법 제5장 제5조, 은퇴할 당시에만 할 수 있음).”

이러한 원로장로에 대한 유권해석은 후결의 원칙에 따라 제97회 총회 결의가 아닌 제101회 총회 결의가 법적 효력이 있다.

결국 총회 유권해석은 원로 목사는 교회 형편에 따라 은퇴 전후하여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면 되지만 원로장로에 대해서만큼은 은퇴할 당시에 아니면 공동의회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했다. 제101회 총회 정치부 안이 본회에서 통과되었던 바, 정치부는 제97회 총회 결의를 참고하지 않고 원로 장로 추대만을 엄격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원로 장로 추대는 제101회 총회 전까지는 제97회 총회 결의대로가 적법하다. 제101회 총회 결의는 소급적용이 안 되며, 제101회 총회 결의는 제101회 총회 파회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미조직 교회 원로 목사 추대 가능 여부

제105회 총회에서 미조직 교회 시무 목사로 동일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는 원로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정치부 안이 본회에 보고되어 채택되었지만, 총회 임원회의 회의록 채택 과정에서 원로 목사를 추대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채택되어 확정되었다.

“부산노회장 박세광 씨가 현의한 미조직 교회 시무 목사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도 절차에 따라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원로 목사가 될 수 없다) 함이 가한 줄 아오며.”

제96회 총회(2011년)에서 “서수원 노회장 이성환 씨가 현의한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4항 중 ‘20년 이상 시무’라는 내용은 위임 목사로 20년인지 아니면 시무 목사로 20년인지에 대한 질의 건과 동일 항목에서 ‘연로하여’에서 나이는 몇 세부터 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의 건은 시무는 20년으로 가결하다”로 결의한 바 있다.

III.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1. 분쟁 사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산하 서중노회의 A 교회의 담임목사는 1978. 12.경부터 2007년 초경까지 29년 동안 시무했다. 원로 목사 생활비로 후임 목사 사례비의 70%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7년 3.부터 2008. 5.까지 월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로 목사 측과 장로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었고, 원로 목사는 장로들을 소속 노회에 교회 재정에 관한 부정행위 및 파탄행위를 이유로 고소했다. 서중노회는 두 명의 장로에게 “제명”에 처하는 판결을 했다. 제명당한 장로들은 총회에 상소했다. 이와 별도로 원로 목사의 지위 여부에 관한 진정도 제기하였다.

이에 총회 재판국은 2008. 9.경 “서중노회 재판국 판결을 무효로 하고 피고인 2인 장로 외 제명 처리된 입교인 전원을 복권하라”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파송 당회장은 불법이며, 임시 목사(시무 목사)인 담임목사를 원로 목사로 결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A 교회는 원로 목사와 장로들은 2008. 10. 1. 교회 문제를 종결하기로 하고 “월 사례비는 2010. 1.부터 후임 담임목사

의 70%의 금액을 10년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2. 1심, 원로 목사 지위 상실은 예우금지 사유

그러나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로 목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로 목사는 2010.1부터 2014. 12.까지의 월 사례비 5,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약정금 지급 청구서를 제기했다.¹⁾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총회판결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원로 목사는 더 이상 교회의 원로 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것이어서, 원로 목사 대우로서 월 사례비를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며 기각되었다. 결국 재판부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서 원로 목사 지위가 상실되었으므로 원로 목사임을 전제로 월 사례비(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교회는 담임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면서 원로 목사 대우조건으로서 월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러한 지급 결의는 “원고가 원로 목사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회 재판국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총회 재판국이 “임시 목사 원고를 원로 목사로 결정한 것은 불법이다”라는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총회 재판국이 원심 치리회인 노회재판국의 판결의 상소 내용만을 판단해야 하는데 상소인이 총회 재판국에 제출한 진정 내용까지 판결에 포함한 위법은 놓쳤다.

1)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단 16159 판결.

3. 2심, 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로 목사 승소

원로인 원로 목사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 ○교회는 원고에게 5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²⁾

IV. 2심 재판부의 판단³⁾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단16159 판결), 2심(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8217 판결) 3심(대법원 2016다 46253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된 사건이다.

1. 이 사건 총회판결에 대한 사법심사 거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총회판결은 총회 헌법 규정에 따라 확정된 권징재판으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종교단체 내부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이 이 사건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관련 법리

(1) 재판부는 본 사건을 판단하면서 관련 법리로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

2)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8217 판결

3) 2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심리 불속행 기각판결(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 46253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제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부가 종교 내부적인 사건은 종교단체 자율권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2) 그러나 종교 내부 문제라 하더라도 무조건 사법심사 배제가 아닌 판단하는 범위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징계 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의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⁴⁾

3) 총회판결 중 원고의 지위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이 권징재판인지 여부

재판부는 앞서 설명한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판단하였다. 1심 판단에서는 임시 목

사인 원고를 이 사건 교회의 원로 목사로 결정한 것은 불법이라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원로 목사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월 생활비(사례금)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2심은 이를 뒤집는 법리를 다음과 같이 내세웠다.

① 이 사건 총회판결은 이유에서 “임시 목사 김○○ 씨를 원로 목사로 결정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단체 내에서의 지위에 관한 판단일 뿐,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거나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1장 제3 내지 5조가 정하는 ‘범죄’에 관한 재판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총회 재판국은 권징재판과 행정재판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고소와 소원 사건을 심판하는바, 원고의 단체 내에서의 지위에 관한 판단은 행정사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총회 재판국이 원고의 지위를 판단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권징재판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비록 이 사건 총회판결이 피고 ○○○, ○○○ 등을 피고 교회에서 제명하라는 이 사건 노회판결에 대한 상소 사건에 관하여 내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노회판결에서는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가 심판대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총회판결 중 원고의 지위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의 성격은 피고 ○○○, ○○○에 관한 판단 부분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총회판결 중 원고의 지위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을 권징재판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이를 제기하며, 재판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첫째, 총회 재판국은 개인의 비위에 대한 권징재판에 의한 상소건으로 전혀 본 사건과 상관이 없는 “단체 내에서의 지위에 관한 건”을 취급했다고 했다. 이는 범죄에 따른 권징재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의 판단이다. 둘째, 총회 재판국은 권징재판과 행정재판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고소와 소원 사건을 심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러한 권징재판도, 행정재판도 아닌 “단체 내에서의 지위에 관한 행정사건”을 “총회 재판국이 원고의 지위를 판단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권징재판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셋째, 총회 재판국은 장로들의 제명 사건에 대한 상소 재판에 원로 목사 지위를 포함하여 판결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었다. 원로 목사의 지위에 대한 문제는 장로의 제명 사건의 상소심인 총회 재판국의 권징재판과는 별개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총회 재판국이 재판을 잘못했다”라는 것이다.

4) 총회판결 중 원고 지위 판단 부분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로 목사 지위에 대한 문제가 권징재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로 목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측면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사 지위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성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로 목사 임을 전제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결의는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에 대한 대우로서 일정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총회판결에서 원고의 지위를 판단한 부분의 당부를 결론지어야만 원고의 약정금 지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고 보이는 점, ③ 총회헌법 정치편 제4조 제4호는 원로 목사에 관하여,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무한 목사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에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오랜 목회생활에 대한 예우를 위한 근거가 되는 지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에 관한 이 사건 총회판결의 내용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은 이 사건 총회판결 중 원고의 지위를 판단한 부분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는 소결론으로 “따라서 이 사건 총회판결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했다.

2.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로 목사(원고)는 A 교회(피고 교회)는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월 사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10. 1.부터 2014. 12.까지의 월 사례비 합계 5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A 교회는 원로 목사를 추대하면서 원로 목사에 대한 대우로서 원고에게 월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서 원고를 원로 목사의 지위가 부인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변경에 따라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월 사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총회 재판국의 판결 효력

(1) 청구에 관한 당부 판단의 전제

A 교회는 2007. 2. 25.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인 담임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다. 원로 목사로 추대하면서, 그와 동시에 원로 목사에 대한 대우로서 월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동의회에서 원로 목사 예우는 담임목사였던 원고가 “원로 목사라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건 총회판결에서는 ‘이유’ 부분에서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를 부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판결 중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를 부인한 판단이 유효한지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2) 관련법리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단을 위해 먼저 관련 법리를 다음과 같이 대법원 판례로 인용했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⁵⁾

종교 내부적인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누리는 개인적인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한 조건을

5)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제시했다. 그 조건은 단순히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여기서 언급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는가? 당연히 재판부가 판단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소송의 당사자들은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즉 자신들의 주장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 혹은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근거에 의해 제시해야 한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로 목사 지위를 부인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의 하자는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총회 재판국은 상소 내용을 벗어난 판결을 하였다.

총회 재판국은 원심 치리회인 노회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한 법률심이다. 원심은 장로 지위에 대한 제명인 권징재판이었다. 이 제명에 불복하여 상소했는데 상소에 포함되지 않는 원로 목사 지위에 관해 판단한 하나가 있다며 법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① 이 사건 노회판결은 피고 교회의 재정에 관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 ○○○, ○○○ 등을 고소한 결과로 서중노회 재판국이 피고 ○○○, ○○○을 피고 교회에서 제명한 권징재판으로 보는바, 행정사건인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에 관한

문제는 이 사건 노회판결의 심판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 ○○○ 등의 위 노회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라 총회 재판국이 선고한 이 사건 총회판결은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둘째, 피고들이 진정서로 제출된 원로 목사 지위에 대한 진정서는 행정사건으로 총회 재판국에서 취급할 수 없다.

원심 치리회인 노회에서 장로 제명처분을 당한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하면서 동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 진정서는 원로 목사 지위에 관한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는 상소에 포함할 수 없는 행정사건을 권징재판 상소심에 포함하여 재판하여 판결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② 총회 헌법 권징조례편 제4장 제19조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의 직할에 속하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중노회 재판국에서는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에 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으로 서중노회가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에 관하여 총회 헌법 권징조례편 제9장 제71조 제3호, 제84조에 기한 행정사건의 소원을 제기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노회판결에 대하여 피고 ○○○, ○○○ 등이 불복하면서 원고에 대한 원로 목사 지위 여부에 관한 진정을 함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청에 비추어 서중노회 재판국에서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행정사항을 총회 재판국에서 1심으로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총회 재판국 판결의 주문과 이유설명은 상호 관련성이 없다. 총회 재판국의 원심판결인 서중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무효라는 주문에서 원

로 목사 지위에 관해 추단할 만한 아무런 조항이 없다. 그런데 주문에 없는 이유에서 원로 목사 지위 부인(추대가 무효)이라는 설명은 주문과 관련성(牽連性)이 없다고 보았다. 관련성이란 “법률로 규율하는 특정한 행위와 이에 반드시 결부되는 행위가 서로 얽히어 관계를 가지게 되는 성질”을 말한 법률용어이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판단했다.

③ 이 사건 총회판결의 주문은 “1. 서중노회 재판국 판결은 무효로 한다, 2. ○○○ 장로, ○○○ 장로 외 제명 처리된 입교인 전원을 복권하라”는 것인바, 주문에서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의 부인에 관하여 추단할 만한 아무런 조항도 두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노회판결이 무효라는 주문과, 이유 중 일부인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 부인은 서로 전혀 관련성이 없어, 이 사건 총회판결 중 ‘이유’에서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를 부인한 판단 부분은 전혀 주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총회판결에는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를 부인하는 근거가 되는 총회 헌법 조항도 적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상소장 제출 이후에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A교회 장로가 노회재판국에서 자신들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장을 제출한 후에 공동의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가 있었는데 이를 상소장 판결에 포함한 행위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하자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④ 이 사건 노회 판결에 대한 상소는 2007. 1. 30. 이루어져 그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이심되었고, 원고를 피고 교회의 원로 목사로 추대한 이 사건 결의는 2007. 2. 25.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총회판결은 이 사건 노회판결에 대한 상소심 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를 부인하였다.

다섯째, 총회에 제출한 상소장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판단했다. 즉 A 교회 장로가 자신들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할 경우, 상소장은 본인들이 직접 총회에 제출하면 안 된다. 상소장은 원심재판국의 치리회인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다음과 같이 법원 재판부가 판단했다.

⑤ 한편, 총회 헌법 제96조는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하회 서기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노회판결 당시 서중노회의 서기였던 김남호가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은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김남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제96조가 정한 절차적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가사 원로 목사의 지위에 대한 행정 사건을 상소장에 포함시킨 권징재판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상소장 제출은 소속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의 절차적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4) 소결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따라서 이 사건 총회판결 중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를 부인한 부분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3) 원고의 원로 목사 지명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재판부의 “원고의 원로 목사 지명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다. 피고 교회는, 원로 목사로 결정될 수 있는 요건인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라는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빙된 목사가 그와 같이 시무하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전제로 원고는 임시 목사에 불과하였는데 임시 목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1년마다 피고 교회에서 시무 청원을 받은 바도 없어 원로 목사로 지명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단 헌법에 조직교회와 미조직 교회가 있다. 조직교회에 시무한 목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70세까지 시무한다. 그러나 미조직 교회의 임시 목사(시무 목사)는 시무 기간이 1년이다. 시무 기간 1년이 종료되면 계속 시무를 위해 공동의회 청빙 결의와 노회 승인해야 한다. A 교회에서 은퇴하여 원로 목사가 된 원고는 임기 1년의 임시 목사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계속 시무 요건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로 목사 추대 자격이 없다고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① 총회 헌법 정치편 제4조 제4호에 의하면, 원로 목사는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서 공동의회의 결정을 받은 후 노회의 최종 결정으로 부여되는 지위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피고 교회에서 2007. 2.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원로 목사로 결정되었고, 위 공동의회는 다시 그 소속 서중노회에 원고의 원로 목사 지명을 청원하여 서중노회의 최종 결정을 받은 점,

② 위 공동의회의 위와 같은 결정에 관하여 서중노회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아무런 소원의 제기가 없었던 점,

③ 개신교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와는 달리

지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교단은 지교회의 내부적 상급단체에 해당하므로, 피고 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어느 정도 보장하여 줄 필요가 있는 점,

④ 한 교회에 20년 이상 시무하는 것을 요건으로 원로 목사로의 지명이 가능하다는 총회 헌법의 규정 취지는, 원로 목사로서 명예를 보존하고 일정한 사례를 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교인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어, 반드시 매년 공동의회에서 임시 목사로서 정식의 청원을 받았어야만 원로 목사로 지명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서중노회의 임시 목사 지위에서 매년 공동의회에서의 청원 없이 계속하여 시무한 목사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교회의 장로와 교인들이 원고에 대한 위임 목사나 시무 목사로서의 청원을 하지 않아 원고가 정기적인 청원 없이 사실상 시무를 해오게 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원로 목사로 지명될 자격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을 제4, 12, 13호증의 각 기재는 이와 같은 판단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교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를 부여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총회 판결에 따라 그 지위가 부인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피고 교회가 더 이상 이 사건 결의의 구속력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피고 교회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라고 판단했다.

4)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피고 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총회 판결에 따라 원로 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피고 교회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함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를 부인한 이 사건 총회판결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교회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판단했다.

5)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한 이 사건 결의내용의 변경 여부에 관한 판단⁶⁾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 ○○○이 2008. 10. 1.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은, 피고 ○○○, ○○○이 피고 교회를 대표하여 그와 같이 약정함으로써 피고 교회의 원고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가사 피고 교회에게 원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책임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 ○○○은 피고 교회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에서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이 아닌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책임을 그대로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 ○○○이 피고 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

6) 이 부분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 68950 판결 등 참조).

앞선 기초 사실 및 갑 제2, 4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 ○○○은 피고 교회를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비록 이 사건 약정서상 원고의 상대방은 피고 ○○○,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약정의 주요부분인 제2항은 ‘피고 ○○○, ○○○이 원고에 대하여 기지급된 부분(퇴직금 및 사택)을 인정하고, 월 사례비는 2010. 1.부터 후임 담임 목사의 70%의 금액을 10년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퇴직금의 지급과 사택의 제공은 피고 ○○○, ○○○의 의무가 아니라 이 사건 결의에 따른 피고 교회의 의무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은 피고 ○○○, ○○○이 이 사건 결의의 연장선상에서 피고 교회의 의무를 수정하는 의미로 체결되었다고 보인다. 본래 이 사건 결의에서는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종기의 정함 없이 계속하여 후임 담임 목사 월 사례비의 7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월 사례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에서 같은 금액을 단지 시기와 종기의 제한만을 두어 축소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②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총회판결의 효력 여하

를 떠나,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기 직전인 2008. 9.경 이 사건 총회판결이 내려지면서, 피고 ○○○, ○○○은 원고의 원로 목사 지위가 부인됨으로써 이 사건 결의의 전제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피고 ○○○, ○○○은 피고 교회의 재정상황에 대한 고려 하에 원고와 피고 교회와 사이의 재산관계에 관한 재정리에 나섰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 ○○○, ○○○이 시무장로의 신분으로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나설 당시, 피고 교회의 파송 당회장이던 박○○은 피고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시무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피고 교회를 떠나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직전에 내려진 이 사건 총회판결은 이유의 제4항에서 “서중노회 ○○○교회 박○○ 목사를(피고 교회의) 파송 당회장으로 결정함은 불법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 교회에는 부목사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시무장로는 피고 ○○○, ○○○ 2인 뿐이었다.

④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의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피고 교회에 관한 다방면의 사항, 즉 피고 교회의 업무 인수인계, 교인들 간의 상호대립과 관련한 고소 등의 취하, 서중노회의 피고 교회 관련 문제 재론 금지, 후임 담임 목사의 청빙을 비롯한 피고 교회의 정상화 등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만약 피고 ○○○, ○○○이 교회를 대표하지 아니한 개인 자격으로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 교회에 관한 각종 사항을 포괄한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 사건

약정은 다른 교회의 목사인 배○○과 최○○의 입회 하에 체결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당일, 약정 문구의 성안 시부터 피고 ○○○, ○○○과 동석한 것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공증사무실에서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⑤ 만약 피고 ○○○, ○○○이 피고 교회를 대표하지 아니한 개인의 자격에서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약정 제2항은 피고 ○○○, ○○○이 이 사건 결의에서 인정된 피고 교회의 월 사례비 지급의무 중 일부를 피고 교회와 연대하여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방법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서상에 피고 ○○○, ○○○이 피고 교회의 지급의무를 연대 보증한다는 등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피고 교회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앞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교회 정관은 제10장 제27조에서 1,000,000원을 초과한 교회 재산의 지출이나 계속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피고 교회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정이 피고 교회 제직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① 당초 이 사건 결의는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피고 교회 제직회의 승인까지 얻었던 점,

②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결의에서 피고 교회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를 축소시키는 변경을 가한 것으로서, 이미 제직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관한 부담을 경감하는 약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은 피고 교회 제직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약정 제3항의 이행이 이 사건 약정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앞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제3항은 원고 측 교인들과 피고 ○○○, ○○○ 측 교인들 간의 사회법 사건에 관하여 쌍방은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정의 체결 후 원고 측 교인인 백명선이 김봉만, 박춘자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에서 그 효력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제5항인바, ① 동 조항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약정 체결 후 피고 교회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문제 또는 노회 또는 총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 사건 약정은 무효로 된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약정 제3항의 완전한 이행과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여하는 서로 결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동 조항은 약정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일신전속적인 의사결정을 의무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만약 이를 이 사건 약정의 효력존속요건으로 새긴다면 동 조항 자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의 체결 후

원고 측 교인이 김봉만, 박춘자에 대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피고 교회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가 아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월 사례비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이 아닌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2010. 1. 1.부터 2019. 12. 31.까지 후임 목사 월 사례비의 70%를 매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그 중 일부인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약정금 합계 58,800,000원[= 10,080,000원(2010.의 월 약정금 840,000원 × 12월) + 10,920,000원(2011.의 월 약정금 910,000원 × 12월) + 11,760,000원(2012.의 월 약정금 980,000원 × 12월) + 12,600,000원(2013.의 월 약정금 1,050,000원 × 12월) + 13,440,000원(2014.의 월 약정금 1,120,000원 × 12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5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보 송달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일인 2015.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 ○○○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0. 1.부터 10년 동안 피고 교회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월 사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 ○○○은, 위 피고들은 피고 교회를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개인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 ○○○ 개인에 대한 청구의 가부

살피건대, 위 3. 마. 2)에서 살펴본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 ○○○은 피고 교회를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 ○○○이 피고 교회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〇〇〇, 〇〇〇이 제출한 제1심 2014. 6. 9.자 준비서면에는 위와 같은 지급 약정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기재가 있으나, 같은 일자 준비서면에는 피고 〇〇〇, 〇〇〇이 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약정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서는 피고 교회의 제직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〇〇〇, 〇〇〇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자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〇〇〇, 〇〇〇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교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위 판결 중 피고 〇〇〇, 〇〇〇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〇〇〇, 〇〇〇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V. 원로 목사 지위 유지에 관한 정관 제정

1. 원로 목사와 분쟁교회

담임목사가 정년 은퇴로 인해 원로 목사가 된 교회가 있었다. 원로 목사가 은퇴 후 교회에 개입하여 교회가 분쟁이 발생한 교회가 있었다. 원로 목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이 교회 역

시 원로 목사에 대한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는 원로 목사와의 명예적 관계가 파기 되었다며,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교회는 원로 목사가 특정 장로와 연대하여 후임 담임목사와 갈등 관계로 교회가 분쟁 가운데 휩싸였다. 교회 여사무원은 원로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을 때 채용된 직원이었다. 원로 목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후임 담임목사의 목회 일정과 정황이 보고되고 있었다. 원로 목사가 뒤에서 교회를 조종하고 있었다.

원로 목사와 여사무원과 비밀 통화 내용이 녹취되었지만, 도청자료라는 것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다. 그러나 원로 목사가 계속 교회를 혼란케 할 경우, 이런 도청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 통화 내용을 무기명으로 교인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 원로 목사에게 지급된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2. 원로 목사 지위 철회와 예우 철회

원로 목사는 지교회 청빙과 노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청빙이 결정되는 것으로 부족하고 노회에서 승인해야 한다면 반대로 철회 역시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원로 목사의 청빙 철회 결의와 노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런 경우, 지교회와 맺고 있는 원로 목사와 그 예우는 철회된다.

또한 원로 목사의 1심 재판 관할인 노회에서 원로 목사가 제명되거나 면직될 때 지교회와의 원로 목사의 명예적 관계는 단절되면 예우 역시 철회된다. 원로 목사 예우란 원로 목사 지위를 전제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원로 목사 지위

가 상실되면 예우 역시 상실된다.

그러나 공동의회 결의만으로 원로 목사의 지위와 예우가 철회되지 않는다. 원로 목사의 노회 승인이 없다면 지교회에서 원로 목사 추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교회와 원로 목사의 관계를 단절하기를 원한다면 교회 공동의회 결의와 노회에 청원하여 해결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원로 목사 예우는 원로 목사 지위를 전제로 주어진 것이므로 지위가 상실되면 예우가 상실된다는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로 목사 지위에 대한 문제는 교단 내부적인 헌법에 따라 결정된다. 노회 승인 없이는 지교회 결정만으로 원로 목사 지위를 상실케 할 수 없다는 점은 지교회 자율권은 교단의 자율권에 구속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결국 지교회와 노회와 연대하면 원로 목사 지위를 박탈할 수 있으며, 그 예우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원로 목사 지위 유지의 교회 정관 규정

만약에 정관에 “원로 목사의 지위와 예우는 공동의회에서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철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둘 경우, 원로 목사와 관계가 악화할 때 예우까지 철회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원로 목사 예우는 원로 목사 지위를 전제로 주어진 것이기에 그 지위가 상실되면 예우도 상실된다는 법리이다.

교단 헌법을 주장하며, 노회에서 원로 목사 지위가 철회되지 않고 교회 공동의회 결의로 철회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교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성문화되어 있을 때 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에 우선한다. 이는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 때문이다.

4. 원로 목사 추대 후 정관변경 경우

원로 목사를 추대하여 노회 승인으로 원로 목사에게 예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원로 목사 예우 상실 규정을 둘 경우에 종전 원로 목사에게 적용되는지이다. 원로 목사 지위 및 예우 상실 규정 이전의 원로 목사에게 변경된 정관변경 규정의 적용에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은 피하기 위해 정관변경 때 이를 종전 원로 목사에게도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을 삽입할 때 이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원로 목사의 지위와 예우는 공동의회에서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철회할 수 있다. 단 종전 원로 목사에게도 소급적용한다.

이러한 정관은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 “교회 정관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로 인정되어 교단 헌법에 우선”하여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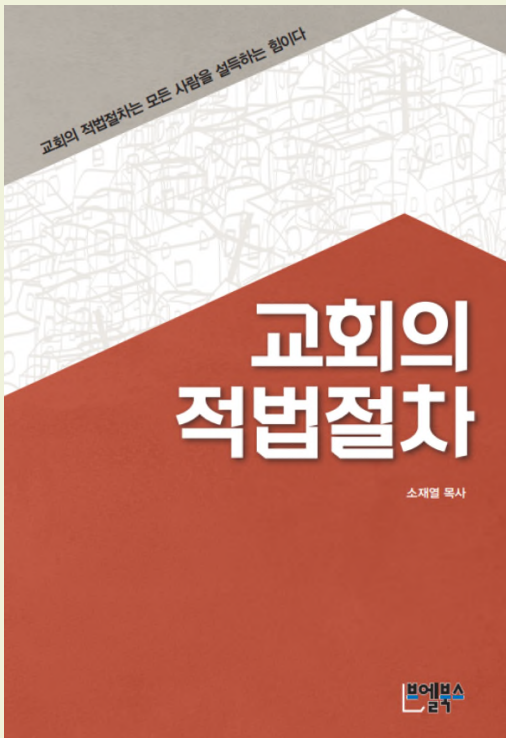
VI. 결론

원로 목사 제도는 교회에 유익이 되는 제도여야 한다. 그런데 원로 목사가 교회를 흔들어 분쟁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서 정년으로 은퇴한 원로 목사가 후임 담임목사의 목회에

관여하거나 간섭한다. 그리고 장로들과 교인들을 조종하여 담임목사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일단 정관변경을 한 후 원로 목사의 지위와 예우를 철회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



소재열 목사 지음, 브엘북스(한국교회법연구소편)
 신국판 양장, 1088쪽, 정가 50,000원
 <개정 증보판>



리폼드뉴스와 한국교회법연구소는 교회회복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중심의 인터넷 언론으로 그동안 12년 동안 총회 역사의 현장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2년 동안 각종 자료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와 관련한 교회법 연구를 통해 교회 회복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를 위해 광고로 협찬해 주신 교회와 당회,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기업은행 657-020624-04-018

(예금주: 한국교회법연구소)

• 리폼드뉴스

기업은행 147-108025-04-016 (예금주: 소재열)

본 연구소에서는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연구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하여 교회법과 관련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주제와 필요성을 아래 메일로 보내 주시면 검토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law134@naver.com

김포시 태장로 780(베네치아차임 오피스텔, 1208호)

전화 (031) 984-9134




브엘북스刊
소재열 목사 지음
정가 50,000원

본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중에 권징조례 해설집으로 1,200 페이지의 분량으로 교단과 교회의 권징재판에 대한 관련 문제를 집대성하였다.

권징조례 초판인 1922년판과 1934년판 그리고 2019년 최근래 판 원문 규정을 삽입하였다. 각 조문해설과 장로회 사법 처리에 대한 법리와 사례를 수록하였다.

주문 (031) 984-9134 (한국교회법연구소)



을 해는 종교개혁(1517년) 502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온갖 유혹과 압박속에서도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옹호하며 철저히 교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주장했다.

본 서는 성경을 보는 관점을 소개하고, 그 관점(하나님의 구속역사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개관했다. 비평주의는 성경을 인간 중심, 도덕적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본 서는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주는 안내서이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성 경은 66권으로 수많은 저자와 각기 다른 시대와 배경 속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역사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보여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역사이다.

하 나님께서 구속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구속을 완성해 가시는가? 그 기대하고 놀라운 파노라미가 펼쳐진다. 그 구속의 파노라미의 핵심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역사의 핵심이고, 주인공이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속역사의 핵심이며,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한다.

김순정 목사(말씀사역원 본부장)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 66권 전체 개관,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필독서!**
 김순정 지음, 670쪽 / 25,000원
 구매방법: 통신판매만 판매 / 070-8869-5944
 (정가 25,000원 입금 후 성경, 주소를 알려주시면 발송함)
 농협 215080-51-192831(예금주: 김순정)

김순정 목사 지음, 브엘북스刊, 신국판 양장본
정가 25,000원
〈도서문의 : 070 - 8869- 5944〉



법률사무소 다감

변호사

김 대 준

전문분야
교회사건, 부동산,
건축, 형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6길 22 성운빌딩 2층
 (02) 522-4531~2 (02) 522-4529 010-5624-4530
 이메일 : 999kdj@hanmail.net